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82

발의연월일: 2023. 1. 10.

발 의 자:김미애・金炳旭・박수영

송언석 · 양금희 · 이종성

이채익 · 이태규 · 이헌승

정우택 · 조명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법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 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업무 및 위원 구성 등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등).

법률 제 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를 "제10조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고독사 통계 작성,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질병) 기록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 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한다.
- ⑦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2.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 지사
-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둔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관계 중앙행정기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 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 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 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 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 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려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 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 ① -----제10조에 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및 고독사 통계 작성, 제12조의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 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 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 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u><신 설></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
 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
 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
 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 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 자료 또는 정보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

- 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각 호의의료급여 실시(질병) 기록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 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 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 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 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 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 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 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⑦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 를 둔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2.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3.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 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

 무원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